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10. 16 선고 2023나526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10. 16 선고 2023나5263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1가합519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욱

변론 종결 2024. 9. 11.

판결 선고 2024. 10. 16.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1가합51966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B와 피고 사이에 2020. 3.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중 180,000,000원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에 대한 양도의 통지를 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B와 피고 사이에 2020. 3.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에 대한 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B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청구를,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각 B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고,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은 모두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만 있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미항소로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만이 남는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며, 제3항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2-3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2항 부동산의 각 1/2 지분 및 3항 부동산의 각 1/1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3, 6행의 각 "위 각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2행의 "2022. 12. 7."을 "2021. 12. 2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2행의 "위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이"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6쪽 6행의 "상황"을 "상환"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3행부터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 회사와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900,563,07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순번 1, 2항 부동산의 갑 제19호증 감정평가서 기재 감정액 합계 1,700,709,320원(순번 1항 1,424,889,000원 + 순번 2항 지1층 58,653,200원 + 순번 2항 1, 2층 217,167,120원) × 피고 B의 지분 1/2}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순번 3항 부동산(2/14 지분)의 위 감정평가서 기재 감정액 100,416,820원 × 피고 B의 지분 비율 1/2}]이다. 한편 피고 회사와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피고 B의 소극재산은 갑 제9호증 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해 대략적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도 2,514,893,141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665,510,000원 + 피고 C 및 피고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720,000,000원(각 360,000,000원) + R 주식회사의 가압류채권액 37,819,061원 + 주식회사 S의 가압류채권액 91,564,080원, 피고 회사는 위 금융기관 채무에 위 각 가압류채권액이 중복되어 있음을 주장하나 이를 공제하더라도 소극재산은 2,385,510,000원에 이른다)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고된 피고 B에 대한 채권액 및 원고의 채권액을 합산하면 2,917,469,261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 B가 피고 회사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 10쪽 17행의 "피고 회사가 아니었다고"를 "피고 회사가 악의가 아니었다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쪽 8-9행의 "그리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을 "그리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중 180,000,000원을(근저당권설정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 A의 지분비율이 동일하므로 피고 C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피고 B의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전체 채권액 360,000,000원 중 1/2에 해당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쪽 10행의 "별지2"를 "별지3"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1심 공동피고 A의 소유지분이 제1심 공동피고 B를 위한 물상담보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는 어디까지나 해당 채무자 고유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 A의 소유지분 부분이 위와 같이 물상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B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자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피고는 사해행위의 수익자로서 악의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강조한 주장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인 N, O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적도 있는 점, 피고가 위 B와 동종 업계의 사람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불황과 그에 따른 위 B 운영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던 점 등 사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악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한편 제1심 공동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해서는 앞선 인용 부분(구체적으로 제1심판결 8쪽 15행부터

10쪽 13행)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당심에 이르러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드러나거나 증거들이 제출되지도 않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김진석

판사김형식

판사이무룡

별지